| 신안산대학교 | 학생책임전담지도교수제 운영 지침 | 규 정 번 호 | 2-5-18 |
|---|---|---|---|
| | | 제 정 일 자 | 2014. 3. 1. |
| | | 개 정 일 자 | 2024.3.20. |
| | | 책임부서/팀·계 | 교무처 |

**제1조(목적)** 이 지침은 신안산대학교 학칙 제40조(학생지도) 제①항 및 학생책임전담지도교수제 운영규정 제7조에 의거하여 학생책임전담지도교수제(이하'책임지도교수제'라 한다.)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2022.4.21. 개정>

**제2조(예산)** 책임지도교수제 운영은 학생배정 인원에 따라 본교 예산으로 집행한다.<삭제>

**제3조(상담대상)** 책임지도교수제는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.

**제4조(학생배정 및 책임지도교수)** ① 책임지도교수는 학생의 소속학과 교원으로 하며, 다만, 학과 통폐합 또는 모집단위 폐지로 학과 교원이 없을 경우 본 대학 교원에 한하여 배정할 수 있다.<2022.4.21. 개정> <2023. 3. 30. 개정>

② 학과 책임지도교수는 학년별로 균형 있게 지도학생을 배정한다. 배정된 학생은 입학에서부터 졸업 후 1년까지 책임지고 지도·상담한다.

③ 학과장은 책임지도교수별 학생배정명단을 첨부한 학생책임지도교수제 운영계획서를 학기 초 4주 이내에 교무처로 제출한다.<개정 2022.4.21., 2023.3.30., 2024.3.20.>

④ 학생이 책임지도교수 교체를 요구할 경우 학과 내 배정인원 조정 후 총장의 허가를 득하여 1회에 한해 허용한다.

⑤ 전과 학생의 경우 전입 학과에서 책임지도교수를 재배정해야 한다. <2022.4.21. 신설>

**제5조(학생상담 방법)** ① 상담은 대면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책임지도교수는 매학기 1회 이상 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③ 책임지도교수는 상담시간표와 지도학생 명단을 학과 게시판에 공지한다.

**제6조(상담의 범위)**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학생 신상 전반에 관한 사항
2. 학업에 관한 사항
3. 대학생활 전반에 관한 사항
4. 진로 및 취업에 관한 사항
5. 기타 책임지도교수 및 학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

**제7조(상담결과)** 책임지도교수는 학생별 상담내용을 학생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작성하고 매 학기말 전체 상담결과를 교무처장을 경유, 총장에게 제출한다. <개정 2022.4.21., 2023.3.30., 2024.3.20.>

**제8조(상담비 지급)** 책임지도교수에게 상담학생 1인당 2,500원의 상담비를 지급 할 수 있다.<삭제>

**제8조의 1(심화상담 및 경비 지원)** ① 책임지도교수는 학생별 상담 결과에 따라 별도의 심화상담이 필요한 경우 일부 학생의 심화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심화 상담 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,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 지침에 따른다.

**부 칙**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지침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지침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지침은 2019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지침은 2022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지침은 2023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지침은 2024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.